



【검토보고서】

2018.11.15.(목)
제299회임시회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유연】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기획예산과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일

2. 제안이유

- 현재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는 시단위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 삭제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정비 및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중 근거가 부족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안 제3조)
- 회의 개최의 정례화를 유지하면서 의안이 없을 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명 수정 (안 제2조)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
- 예고기간 : 2018. 8. 30. ~ 9. 19.(20일간)

5. 검토의견

가. 개정개요

-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우리시 조례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반영·정비하고 있으며,
- 본 개정조례안도 규제개선 대상과제의 하나로(참고자료)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위명 및 회의 운영방식을 현재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직위명 변경 (안 제2조)

- 현재 직위명에 맞도록 변경
 - 자치행정국장 → 기획행정실장
 -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 → 실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기획행정 실장-----</p> <p>-----</p> <p>-----</p> <p>-----</p> <p>③ ----- 실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 -----</p> <p>-----</p> <p>-----</p> <p>-----</p>

2) 법령에 위임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 삭제 (안 제3조)

- 법령에서 통합 및 대행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위원회가 구성 되어있지 않은 시단위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심의·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문·조언·권고·건의 등을 말한다.</p> <p><u>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추진위원회·협의회 등(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u></p>	<p>제3조(심의·결정사항) ----- -----, ----- -----, ----- <u><제2호 삭제></u></p>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위원회 회의운영방식 개정 (안 제4조)

-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를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하도록 되어있는 운영방식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의안이 없을 경우 개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u>	제4조(회의) ① ----- 다만, <u>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정비 기준에 따라 근거없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현재 운영방식에 맞도록 회의개최 방식의 변경 및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3개의 개별조례 역시 위원회 대행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각 위원회의 본래 기능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인지 대행규정만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조례 개정현황]

담당부서	조 례 명	정 비(안)	비 고
미디어정보담당관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위원회 규정삭제	제299회 임시회
자치행정과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공적심사위원회 대행	제299회 임시회
문화관광과	양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별도위원구성	개정예정

조례내용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지문·심의·연구·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하여 시 단위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 문제점

-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상 통합(대행)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행정편의적 집행 우려

II. 개선방안

-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